

한미 FTA로 인한 금융산업의 변화*

河 駿 垞 (研究委員, 3705-6348)

한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부문은 부분적인 개방 확대, 제도의 정비 및 규제 투명성 강화, 미국 진출 환경 개선 등의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개방 확대는 일부 금융부수 서비스업에 국한되므로 그 직접적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제도 정비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규제 및 감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원리의 작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에서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한편 한미 양국 금융감독당국 간에 전반적 신뢰도가 높아지고 양국 간 애로사항 협의채널이 구축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미국 진출에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우리 금융산업에서는 제도의 선진화에 걸맞는 인력의 전문화가 가장 절실한 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미국 진출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가 타결되면서 금융부문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제 FTA로 인해 금융부문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차분히 가늠해볼 때이다. 이번 FTA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부문은 부분적인 개방 확대, 제도의 정비, 미국 진출 환경 개선 등의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금융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또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한국금융연구원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혀둡니다.



추가 개방분야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

우선 한미 FTA를 통해 금융부문에서 추가로 개방되는 분야는 보험중개업 및 일부 보험부수 서비스업 등의 국경간거래이다.

보험중개업의 경우 비대면 방식을 전제로 국경간거래가 허용되는데, 비대면 방식을 유지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래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에도 허용되고 있는 국제교역 관련 보험, 생명보험, 장기 손해보험 등의 비대면 방식 국경간거래의 경우 그 거래규모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예컨대 생명보험 역외보험료 송금실적은 2005년 34억원으로 국내 생명보험 시장의 0.1% 미만이며 손해보험의 전체 역외보험료 송금실적은 2005년 1,432억원(대부분 수출입 관련)으로 국내 손해보험 시장의 0.6% 수준에 불과한데, 이 중에서도 일부분만이 국경간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현행법에서도 보험중개사는 국내법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주재하면서 중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비대면 방식을 유지하는 한 굳이 국경간거래를 통해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적다.

다음으로 보험부수 서비스업 중 위험평가와 컨설팅의 경우에는 현재 명확한 법규정 없이 허용되던 거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FTA로 인한 거래규모의 실질적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들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었는데, FTA를 계기로 등록요건이 신설되므로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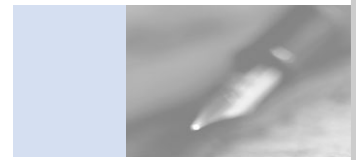
보험부수 서비스 중 계리 및 손해사정 서비스의 국경간거래도 사실상 자연인의 국내 방문이 수반되어야 거래확대가 가능하므로 현재에도 허용되고 있는 상업적 주재를 통한 개방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들 분야에서는 현재 국내법에서 규정된 자격제한과 유사한 기준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국경간거래가 허용되므로 더더욱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부 법·규제의 정비가 예상

다음으로 한미 FTA가 법·규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그간 제도정비가 미비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일부 법령과 규정의 정비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한 협상타결내용과 그 영향을 알아보자.

한미 FTA를 통해 금융 부문에서 추가로 개방되는 분야는 보험중개업 및 일부 보험부수 서비스업 등의 국경간거래인데, 이들 분야에서 실질적인 거래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미 FTA를 통해 그간 제도정비가 미비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일부 법령과 규정의 정비가 예상되며, 한미 양국 금융 감독당국 간 협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정보의 해외 위탁처리가 허용되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금융감독을 전제로 2년 유예 후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정보처리 해외위탁과 관련한 사전 허용기준 및 사후 감독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미 양국 감독당국 간 정보교환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당국 간 협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체국보험에 대한 감독이 강화됨으로써 우체국보험에 주어진 특혜가 축소되는데, 이에 따라 금감위와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될 것이 예상된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일부 분야에서의 국경간거래 확대에 따라 국경간거래 공급자의 등록요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규 정비가 있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건전성 감독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 신금융상품은 국내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신상품 승인 요건이나 기간 등의 측면에서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 규제 관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촉매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 세이프가드의 관철은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의 제도적 변화들은 전반적으로 금융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워지고 투명해지는 데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투명해지면 시장원리의 작동이 더욱 원활해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들 사이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미국 금융회사들의 국내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워지고 투명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들 사이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미국 금융회사들의 국내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금융회사들의 미국 진출 확대 가능성

한편 한미 FTA로 인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미국 진출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논의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금융부문이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므로 수세적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 미국 주법에 규정된 미국 주재 외국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연방제라는 미국 정치제도의 특성상 FTA를 통해 이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요소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신뢰 증진을 통해 미국 진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

한미 FTA로 인해 국내 금융규제가 투명해지면 한미 양국 간에 명문화되지 않는 “신뢰”의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미국 영업에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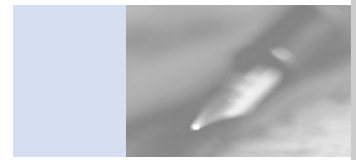
그러나 미국의 외국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는 명시적 법규뿐만 아니라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간의 신뢰, 그리고 그밖에 외국 금융회사 본국 금융제도의 적절성 등의 부수적 정보에도 많이 의존한다. 미국 감독당국이 외국 금융회사들을 모국(home country)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고 이에 근거해서 감독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 FRB의 경우에도 주요 28개국을 적절한 금융감독이 이루어지는 국가들로 분류한 후 이 사실을 감독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28개국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한미 FTA로 인해 금융규제가 투명해지면 명문화되지 않는 “신뢰”의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미국 영업에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미국 진출 애로 해결을 위한 정부 간 협의채널 구축

한미 FTA를 통해 설치되는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보험 실무작업반 회의는 미국 측의 약속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애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한 채널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채널을 금융회사들이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이다.

또 한미 FTA 금융협상에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영업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양국 정부 간에 정기적 협의채널을 확보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FTA 금융협상에서도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애로사항 중 세 가지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한다. 은행업의 경우 뉴욕주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에 대한 자산유지의무비율이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우리 은행들이 미국에서 영업하는 데 따르는 자산관리 비용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에서 우리 은행들의 위험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보험업의 경우에도 미국 측은 재보험 담보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2007년 중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증권업과 관련해서는 미국 현지법인 직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밖에도 더 많은 애로사항들이 양국 정부 간에 정기적으로 논의될 것이 예상되는데, 한미 FTA를 통해 설치되는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보험 실무작업반 회의는 미국 측의 약속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애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한 채널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채널을 금융회사들이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이다. 협의채널의 유용성은 궁극적으로 금융회사들의 관심 정도에 달려 있다.



제도 선진화에 걸맞는 인력의 전문화가 필요

이상에서 한미 FTA로 인한 개방분야 확대의 직접적인 충격은 작을지라도 규제·감독의 투명화와 경쟁심화가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미국 진출 용이성을 높일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었다는 점 등이 주목할 만하다.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인력, 두 가지가 모두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문인력의 확보는 국내 금융부문의 변화에 대한 수용능력(absorptive capacity)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다. 따라서 FTA로 제도의 선진화가 촉진될 것이 기대되는 지금 우리 금융산업에서는 인력의 전문화가 가장 절실한 요구사항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미국시장 진출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금융전문인력 양성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미 FTA로 미국 진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더욱 많은 금융인력을 미국시장에 내보내어 이들로 하여금 전문역량을 쌓도록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미국 현지법인이나 지점도 단순히 재미교포를 상대로 하는 틈새시장에 안주하거나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는 데 머물지 말고, 전문인력 양성의 장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현지법인을 사서라도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KIF**

FTA로 제도의 선진화가 촉진될 것이 기대되는 지금 우리 금융산업에서는 인력의 전문화가 가장 절실한 요구사항이며, 더욱 많은 금융인력을 미국시장에 내보내어 이들로 하여금 전문역량을 습득하도록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